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도자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4년 3월 28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김선민 소재부품정책과장, 송영상 사무관(044-203-4263)	

우수한 소재·부품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유치 지원 확대

– 산업부, 『민간투자활성화방안』 발표, 상시 IR(Investor Relation) 지원제도 도입, 소재부품전문펀드 조성, 소재부품 『민간투자협력네트워크』 출범 등 총력 지원 –

□ 『제3차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13.11.25)』 후속조치로서 우수한 소재·부품 기업에 풍부한 투자자금이 적시적소(適時適所)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확대될 계획임

○ 앞으로 민간투자자금을 희망하는 소재·부품 중소기업은 투자유치에 꼭 필요한 기술성·경제성평가, IR(Investor Relation) 컨설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소재·부품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전문펀드가 신규로 조성되며, '투자자연계형 R&D사업(연간 500억원 수준)'의 소재부품 지원 비중을 70%까지 확대함으로써 매년 200억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부품에서 고부가가치 소재분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

○ 그간 '부품소재투자조합(부품소재특별법 제6조)' 결성을 할 수 없었던 유한회사, 외국투자회사도 조합 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재·부품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을 투자기관, 기업, 업종단체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발표하였음

○ 당일 민간투자기관,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KITIA),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업종단체 등 51개 기관이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소재·부품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 일시/장소 : **3.27(목) 12:00~13:30** / 조선호텔 튜울립룸
* 참석 : **산업부 김재홍 제1차관**, 경상대 권순기 총장, 소재부품기업, 투자기관(창투사, 은행 등), KITIA, KEIT, 업종별 단체 등 20여명
* 주요내용 : 소재·부품 민간투자활성화 방안 발표,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지난 2001년 '부품소재특별법' 제정이후 정부의 집중적인 재정지원과 민간투자에 힘입어 소재·부품 수출규모 5위의 위업을 달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소재·부품 무역흑자 **1,000억불 돌파**가 예상되고, 우리의 약점이었던 대일의존도와 무역적자가 **각각 10%대와 100억불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소재부품무역흑자(억불) : ('01)27 →('13)976→('14e)1,012
* 대일수입의존도(%) : ('13)20.8→('14e)19%대, 대일적자(억불) : ('13)△205→('14e)△198

○ 이러한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향상에 따라 향후에는 정부 주도의 성장보다 **'정부의 정책지원-기업의 기술개발노력-민간 부문의 투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선순환 성장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시점

○ 그러나 최근 정부의 재정여건상 소재·부품 예산이 대폭 증가가 어려운 가운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도 여전히 융자중심인 현실에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매우 중요한 상황

* 부품 사업화자금 조달수단 중 투자비중(%) : (美) 50%, (英) 30%, (獨) 20%, (韓) 1%

○ 특히, 상대적으로 부품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소재 분야**에 정부 예산과 민간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투자활성화방안 주요 내용 〉

□ 이번 방안은 『제3차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13.11.25)』의 '소재·부품 분야 민간투자활성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소재·부품 중소기업에 자발적인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업과 투자기관 간의 연결고리(missing link)**를 채워 간극을 해소해 나갈 계획임

○ 소재·부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간 투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 많으나 해당기업의 기술성, 경영환경, 사업전망 등을 투자자에게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 창투사 등 투자기관 입장에서는 투자자금은 풍부하지만 급변하는 기술동향에 대처할 수 있는 자체적인 전문인력, 기업정보 등이 부족하여 투자대상 기업을 발굴하기 어렵다는 애로가 있어 왔음

○ 이러한 기업과 투자기관간의 간극를 해소하고자 '소재·부품 상시 IR(Investor Relation)' 지원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 통상 IR이 기업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금번 제도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투자유치에 꼭 필요한 기술성·경제성평가, IR(Investor Relation) 컨설팅 등 기업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부분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음

-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원장 이기섭)**이 국내 최고의 기술성 평가 노하우와 우수 기업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투자희망 기업을 위해 객관적인 기술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투자기관의 기술성 검증 부담을 경감해주는 한편, 추가로 상세한 지재권 분석, 신뢰성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도 지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신뢰성 있는 기업정보를 제공할 것임

- 또한, 창투사, 은행 등 소재·부품 투자기관협의체인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KITIA, 회장 신장철)**가 IR 전문 컨설팅 기관과 협조하여 투자유치 사전 준비단계부터 투자설명회(IR)까지 1:1 컨설팅을 통해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일 계획임

 *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부품소재특별법 제21조) : 소재부품기업에 대한 투자의 지원 및 조정 업무 담당, 창투사, 은행 등 128개 회원사

- 이러한 투자유치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90%(최대 2,000만원)까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며, 3.28일부터 1년 내내 투자유치 희망 기업을 신청 받을 예정임

○ 또한, 상시 IR 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유망기업중에서 글로벌 수요기업으로부터 전략적 투자유치를 희망하거나 M&A를 원하는 기업은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KITIA)의 '소재부품투자협력센터'와 '글로벌 M&A데스크'에서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도울 예정임

 * (소재부품 투자협력센터) 4,600여개의 해외소재부품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보유
 * (글로벌 M&A 데스크) 21개국 85개의 글로벌 M&A 자문사와 협력관계

□ **둘째**,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재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산업부 R&D 사업중에서 '투자자연계형 R&D사업'의 지원 대상을 소재분야에 집중할 예정임.

○ 현재 27:73인 소재/부품 지원비중을 **2017년까지 70:30까지 확대**함으로써 매년 2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가 부품에서 고부가가치 소재분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

【참고】 투자자연계형 R&D사업 개요('14년 500억원)
- 정부 R&D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투자기관의 투자유치를 받아야함
- '00~13년간 정부 R&D자금 1.1조원에 대응하여 민간투자자금 1조원 유입

□ **셋째**, 보다 많은 민간 투자재원이 소재·부품 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소재·부품에 특화된 전문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함

○ 그간 제조업 전반의 투자를 통해 소재·부품 기업에 일부 투자가 있었으나, 금번에는 중기청과 협업을 통해 모태펀드내 **200억원 규모의 '소재부품전문펀드'**를 조성('14.3.14 중기청 공고)하기로 하고 7월까지 조합결성이 완료될 예정임

 * (투자요건) '부품소재전문기업(부품소재 매출액 50% 이상)'에 결성액의 60% 이상 투자 의무
 * (주요일정) 투자조합 선정(~4월) → 조합결성완료(~7월)

□ **넷째**, 투자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임

○ '부품소재투자조합(부품소재특별법 제6조)' 결성 요건을 완화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유한회사와 외국투자회사**도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서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 업무집행조합원(GP, General Partner) : 투자조합을 구성하는 출자자 중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조합원

- 현재 1인 GP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투자자의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인 이상의 공동GP도 허용**할 예정임

 * 창업투자조합(벤처특별법), 벤처투자조합(중기창업지원법) 등도 허용하고 있는 사안
 * 최근 은행, 유한회사 등이 공동 GP형태로 부품소재투자조합 결성을 시도하였으나, 규정상 제약으로 결성이 무산된 사례가 있음

○ 또한, 투자대상인 '부품소재전문기업'의 풀을 현재 3,000여개 수준에서 확대해 나가고, 전문기업 확인 요건을 현행 매출액 단일기준에서 기술력, 기업규모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임

*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여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첨단소재 분야의 경우 초기 지원이 중요한바 매출액 50%에 도달하기 전까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
* 부품소재전문기업 : 부품소재매출액이 50% 이상인 기업('14.3월 현재 3,260개)

〈 간담회 관련 내용 〉

□ 김재홍 차관은 우리 소재·소재부품 산업이 한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정부정책-기업의 노력-민간의 투자' 등 3개의 톱니바퀴가 유기적으로 잘 맞물려 협력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 앞으로도 소재부품 기업이 경제성장의 근간이 되어 일자리 창출과 수출을 통해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였음

□ 현재 창투회사 대표와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신장철 회장은 금번 방안이 소재·부품 중소기업에 투자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소재·부품 펀드 조성 확대 등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하였음

【첨부 1】 간담회 개요
【첨부 2】 소재부품 투자활성화 방안(요약)
【첨부 3】 소재부품 투자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서
【별 첨】 소재·부품 민간투자활성화 방안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과 (☎ 044-203-42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소재·부품 투자활성화 방안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14. 3.27(목), 12:00 ~ 13:30 / 조선호텔 2층 튜울립룸

□ 세부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2:00~12:05	(5분)	· 인사 말씀	차관
12:05~12:20	(15분)	· 소재부품 민간투자활성화 방안	소재부품정책과장
12:20~13:20	(60분)	· 오찬 및 간담회	
13:20~13:25	(5분)	· 마무리 말씀	차관
13:25~13:30	(5분)	· MOU체결 및 포토타임	

□ 주요 참석자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김재홍	
		소재부품정책관	최태현	
		소재부품정책과장	김선민	
학계	경상대학교	총장	권순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석인	
투자 유관단체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회장	신장철	
		상근부회장	김 호	
국내 투자기관	기업은행	부행장	조희철	
	산업은행	벤처금융부장	조승현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주)	대표이사	조수봉	
	아주아이비투자(주)	상무	조남춘	
해외 투자기관	DFJ Athena Korea	대표이사	정회훈	
	JAFCO Investment Korea	이사	남경균	
기업	(주)디엔에프	대표이사	김명운	
	(주)에코에프엠	부사장	박종호	
컨설팅기관	(주)아이알큐더스	대표이사	이준호	
R&D 유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본부장	박종만	
	생산기술연구원	본부장	이덕근	
업종별 단체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박영탁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	이종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상무	강홍식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	고문수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첨부 2 소재·부품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요약)

1 유망 소재부품 중소기업 발굴 및 투자지원

① 소재부품 상시 IR(Investor Relation) 도입

- 민간투자를 희망하는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지원(기술성·경제성평가, IR컨설팅 지원)을 통해 투자기관과 연결해주는 연중 상시 IR 추진('13.4월~)

 * 상시 IR 개요 : ①유망 소재부품기업 발굴·선정 → ②투자유치지원(기술성·경제성 평가, IR컨설팅 지원) → ③투자유치 IR → ④사후관리

② 해외 글로벌 전략적 투자기관과 연계

-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KITIA)내 기 구축된 '소재부품투자협력센터' 및 '글로벌 M&A데스크'와 연계하여 투자유치와 함께 해외 선진시장 진출 지원

 * (소재부품 투자협력센터) 4,600여개의 해외소재부품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보유
 * (글로벌 M&A 데스크) 21개국 85개의 글로벌 M&A 자문사와 협력관계

2 투자유입 촉진 및 저변확대

③ 소재부품분야 전문투자펀드 조성('14.3월 공고)

- 중기청과 협업을 통해 모태펀드內 '소재부품전문펀드' 신설('14년 2,0[illegible])

 * '소재부품전문기업(소재부품특별법 제2조)'에 결성액의 60% 이상 투[illegible]
 * 중기청협의 기완료('13년말) → 투자조합 선정(~4월) → 조합결성완료(~7월)

④ '투자자연계형 R&D 사업' 소재분야 지원 비중을 70% 이상(현 27%)까지 확대

 * 투자자연계형R&D 투자비중(소재/부품, %) : ('13)27/73 → ('15)45/55 → ('17)70/30
 * 투자자연계형사업('00~) : 민간투자가 선행된 이후 정부 R&D 자금 지원

⑤ 소재부품『민간투자협력포럼』운영('14.4월~, 분기별 1회)

- 소재부품 중소기업, 투자기관, 전문컨설팅 기관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한편 최신기술동향, IR, IPO 등 전문지식 공유

3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규제완화 측면, 시행령 개정사안)

⑥ '부품소재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합결성자격 완화 등

 * 유한회사(LLC), 외국투자회사의 조합결성 및 공동 업무집행조합원 허용 등

⑦ '부품소재전문기업' 제도 개선

 * 부품소재전문기업 풀 확대(3,260개→5,000개) 및 확인요건(매출액 50%이상) 완화 등

첨부 3 소재부품 투자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서

본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이하 '본 건 당사자'이라 함)는 소재부품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소재부품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건 당사자는 국내 소재부품 중소기업이 본 사업을 통하여 원활한 투자유치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량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간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 (추진배경)

본 사업은 소재부품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 및 소재부품 특성에 맞는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전한 소재부품 투자생태계 조성과 창조금융 기반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3조 (본 건 당사자의 역할)

1.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 투자유치 희망 기업발굴 및 지원대상 선정
 - 기술평가 및 IR 컨설팅 지원
 - 맞춤형 투자설명회 개최(1:1 투자설명회 또는 공동 투자설명회)
 - 투자자 매칭 및 투자협상 지원
 - 투자계약 체결을 위한 후속 지원
 - 소재부품 투자유치 저변 확대 및 네트워크 지원

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기술평가 수행 및 기술자문
 - 투자유치 희망 기업발굴 및 추천
 - 기업 및 기술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
 - 사업의 홍보

3. 업종단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 투자유치 희망 기업발굴 및 추천
 - 사업의 홍보
 - 기업 및 기술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
 - 기업자문 및 지원 프로그램 알선

4. 투자기관

- 적극적인 투자검토 및 투자집행
- 투자유치 희망 기업발굴 및 추천
- 사업의 홍보
- 기업 및 기술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

제4조 (비밀유지의 의무)

1. 본 건 당사자는 제3조의 업무진행 과정에 있어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미공개 정보(이하'비밀정보'라 함)에 관하여 상대방의 사전 서면에 의한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2. 본 건 당사자의 업무담당 임직원과 본 협약서의 수행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 본 업무진행을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및 법령, 규칙, 명령 혹은 행정지도 등에 근거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유효기간)

본 협약서의 효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6조 (일반사항)

1. 제4조를 제외한 본 협약서의 모든 규정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본 협약의 어느 당사자도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 또는 문서를 체결하기 전까지는 본건에 관하여 어떠한 법률적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본 협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건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추가하고, 합의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3. 위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건 당사자들은 본 협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3월 27일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인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인

중소기업은행 인

㈜네오플럭스 인

대경창업투자㈜ 인

대성창업투자㈜ 인

동양인베스트먼트㈜ 인

㈜마젤란기술투자 인

보광창업투자㈜ 인

산은캐피탈㈜ 인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인

㈜송현인베스트먼트 인

스틱인베스트먼트㈜ 인

㈜아이비케이캐피탈 인

아주아이비투자㈜ 인

㈜에스엘인베스트먼트 인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인

엘비인베스트먼트㈜ 인

엘앤에스벤처캐피탈㈜ 인

이 ㄷ폴리스파트너스(유) 인

케이비인베스트먼트㈜ 인

케이티비네트워크㈜ 인

㈜케이티캐피탈 인

키움인베스트먼트㈜ 인

포스텍기술투자㈜ 인

한국산업은행 인

한빛인베스트먼트㈜ 인

현대기술투자㈜ 인

DFJ Athena Korea 인

JAFCO Investment Korea 인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인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인

정밀화학산업진흥회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발전협의회 인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